

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2. 9. 9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9. 18

다. 상정일자 : 제1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도시위원회(1992. 9. 22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: 제안이유, 주요골자 별첨안 참조

(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첨 자료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

가. 박수관 위원(질의)

- 1)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국·공유지는 사업자가 무상양여를 받는줄 아는데 몇 필지, 몇 평인지?
- 2) 사업지구내 도로개설 및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시 국·시비는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?
- 3) 본 조례 제8조 잉여금 처리는 결산후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 사업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이입되는지?

나. 건축과장(답변)

- 1)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국·공유지는 전체가 217필지 9,300여평 정도 이며
- 2)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국·시비를

보조받고 있는데 현 건설부 지침의 예를 보면 약 30% 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잔여분은 무상양여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.

3) 본사업 기간이 '91. 2. 25~'99. 12.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업종료가 될 때까지는 다음 연도의 특별회계에 이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

다. 구분출 위원(보충질의)

장림1, 2 및 신평1지구의 신평2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지역적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?

라. 건축과장(보충답변)

추가지정 대상은 약 97동인가 되는데 전체 지정 동별 내역을 도면에 표시하여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.

5. 토 론 요 지

가. 구분출 위원(찬성토론)

우리 사하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찬성합니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의결(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)